공 고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556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629)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㈜티에스에코텍(박상봉, 진민호)

나. 전화번호 : 031-8019-8170

- 2. 명칭: 노후관로 구조적 보강을 위한 PE 밀착형 비굴착 갱생 기술(PE-CFL)
- 3. 신기술의 내용

<분야>

토목 > 상.하수도 >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

<기술의 요지>

굴착 교체가 어려운 구간의 노후된 기존 배관을 최소한의 굴착으로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, 기존관 내부로 기존관의 내경보다 $10\sim20\%$ 관경을 축소시킨 PE관을 견인 삽입 후, 자연복원 확장에 의해 기존관 내벽에 밀착시키는 관 갱생 공법으로, 갱생에 필요한 라이너를 신관과 동일한 PE관을 사용하는 완전 구조적 갱생이 가능한 기술로 노후관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갱생기간이 짧으며 갱생과정이 간단하여 품질관리가 용이한 공법

<범위>

노후된 상하수도관을 굴착교체 하지 않고 PE관의 관경을 일시적으로 축소하여 기존관 내부로 견인후 자연복원력에 의해 확장되면서 기존관 내벽에 밀착시키는 구조적 보강이 가능한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으로 관경 300mm~1,000mm의 전 관종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

- 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 - 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 - 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 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· 도용한 경우
 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 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